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신산업 육성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보조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기획과의 명칭을 공공조달정책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8. ~ 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혁신조달기획과)”를 “(공공조달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항 및 제4항 중 “혁신조달기획과”를 각각 “공공조달정책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한시정원)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1,083”을 “1,085”로 하고, 일반직 계 “1,072”를 “1,07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30”을 “1,032”로 한다.

별표 3의2 제3호 중 “혁신조달기획과”를 “공공조달정책과”로,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147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2023년 3월 1일”을 “2024년 3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기획재정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4조 관련)

제34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혁신조달기획과) 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u>혁신조달기획과</u> 를 둔다.	제33조(공공조달정책과) ① ----- ----- ----- 2024 년 2월 29일----- ----- <u>공공조달정책과</u> ----- --.
② <u>혁신조달기획과</u> 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u>공공조달정책과</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혁신조달기획과</u> 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④ <u>공공조달정책과</u>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한시정원) ① 삭제	제34조(한시정원) 재정사업 정보
② 삭제	<u>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u>
③ <u>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u>	<u>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u>
④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
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충
원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
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1473호 기획재정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
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
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
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 제3호의 정원 1명(4
급 1명)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3월 1일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
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

대통령령 제31473호 기획재정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
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
과조치) -----

----- 2024년 2월 29일-----
----- 2024년 3월 1일 -----

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 으로 본다.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83</u>	<u>1,085</u>	+2
•	•	•	
•	•	•	
일반직 계	<u>1,072</u>	<u>1,074</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30</u>	<u>1,032</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8